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2026

국민성장펀드

목 차

| | |
|------------------------------------|----|
| I. 국민성장펀드 개요 | 1 |
| II. 국민성장펀드 지원구조 | 3 |
| 1. 지원구조 개요 | 3 |
| 2. 대출 및 보증 | 7 |
| 3. 직접투자 | 11 |
| 4. 간접투자 | 14 |
| 5. 인프라금융 | 17 |
| III. 국민성장펀드 심사 절차 | 20 |
| IV. 자주 묻는 질문(60문 60답) | 23 |
| 1. 개념 | 23 |
| 2. 지원대상 | 30 |
| 3. 지원방법 | 42 |
| 4. 국민참여형 | 45 |
| 5. 지방 | 47 |
| 6. 지원방식 | 49 |
| 7. 거버넌스·의사결정 | 54 |
| 8. 조성·집행 | 65 |
| 9. 재정 | 70 |
| 10. 역할/영역 중복 문제 | 72 |
| 11. 기타 | 81 |

I. 국민성장펀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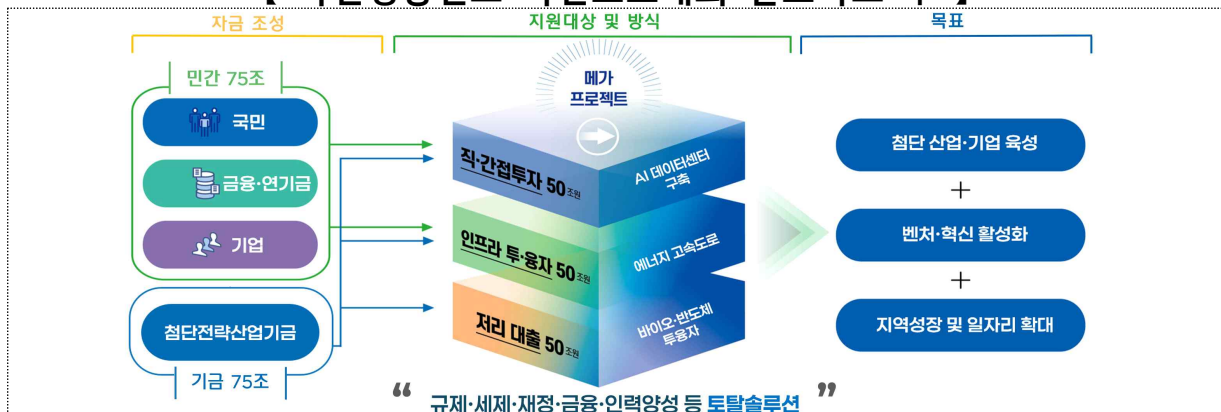
□ 설립 배경 및 목적

- (배경)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25.3.5자”)
 - 정부는 세계 각국의 첨단전략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금융지원을 위한 산은 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추진
 - * 미국 CHIPS법 시행, 일본 민관합작 설립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설립 등
- (목적)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 운용 방안

- 정부 보증채를 기본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 앞저리대출, 직·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기금 75조원*,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조성
 - * 정부보증 기금채(주요 재원), 한국산업은행 출연금 등
 - ** 금융회사, 연기금, 기업, 국민참여자금 등
- 투자 50조원(직투 15조원, 간투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저리대출 50조원으로 운용하며, 메가 프로젝트 위주* 지원
 - * GPU 10만장 이상의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 등

【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中 】



➔ 150조원(공공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의 자금을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여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준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 **민간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
 (26년 1조원 예산반영)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기금운용심의회
(첨단전략산업기금 심의)

집중
지원

메가프로젝트 / 밸류체인 / 지역

투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식

| | | | |
|----------|------------|----------|----------|
| 지분 투자 | 인프라 투융자 | 간접 투자 | 국민 참여 |
|----------|------------|----------|----------|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

(대규모 자금 +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토탈솔루션)

* 예) 반도체 공장 라인신설 시설자금,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앞 에너지공급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① 미래 20년 新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Target

-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90개 기술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핵심광물, 콘텐츠

②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

③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

Ⅱ. 국민성장펀드 지원구조

① 지원구조 개요

□ 지원 개요

- 지원방식 : 대출, 사채인수, 보증, 출자, 자산 매수 등
- 지원통화 : 원화, 외화*(예정)
 - * 외화는 국민성장펀드의 외화자금 조달 가능 시점 이후 취급 검토 예정
(프로그램 운용초기에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원화 우선 지원 예정)
- 지원기간 : 20년 이내(기금 운용기간 이내)

□ 지원 대상

- ① **첨단전략산업기업** :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

| 구분 | 관련법 | 대상 업종(총 12개) |
|------------|-----------------------|---|
| 산은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인공지능*(총 10개) |
| 산은법 시행령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 핵심광물(총 1개) |
| | 콘텐츠산업진흥법 | 콘텐츠산업(총 1개) |

* 인공지능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기술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업종으로는 지정되어 있어 지원대상 업종으로 포함

- ②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 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

※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의 6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1. 첨단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 첨단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상대방
- ☞ 첨단전략산업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너지 공급 및 전력망 설비, 용수처리 시설 등) 기업 등을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대상 판단 가이드》 → 아래 ①, ②, ③, ④ 중 한 개 이상 해당기업

| | | |
|------------|----------------------------|--|
| 첨단전략산업기업 | 산 은 법 |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 보유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
| | | 또는 |
| 첨단전략산업기업 | 산 은 법 시 행 령 | ② ① 기업이 속하는 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AI ※ 제한된 기금 자원 감안, 업종을 확대 해석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은 지양하고자 지원대상 업종은 상기 10개 산업으로 한정 |
| | | 또는 |
| 첨단전략산업기업 | 산 은 법 시 행 령 | ③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 첨단전략산업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 -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한 업종 포함 |
| | | 또는 |
|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 산 은 법 시 행 령 | ④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 (예시) 첨단전략산업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너지 공급, 전력망 설비, 용수처리 시설 등) 기업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 (예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PEF, SPC 등 첨단전략산업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상대방 - (예시) 구매자 금융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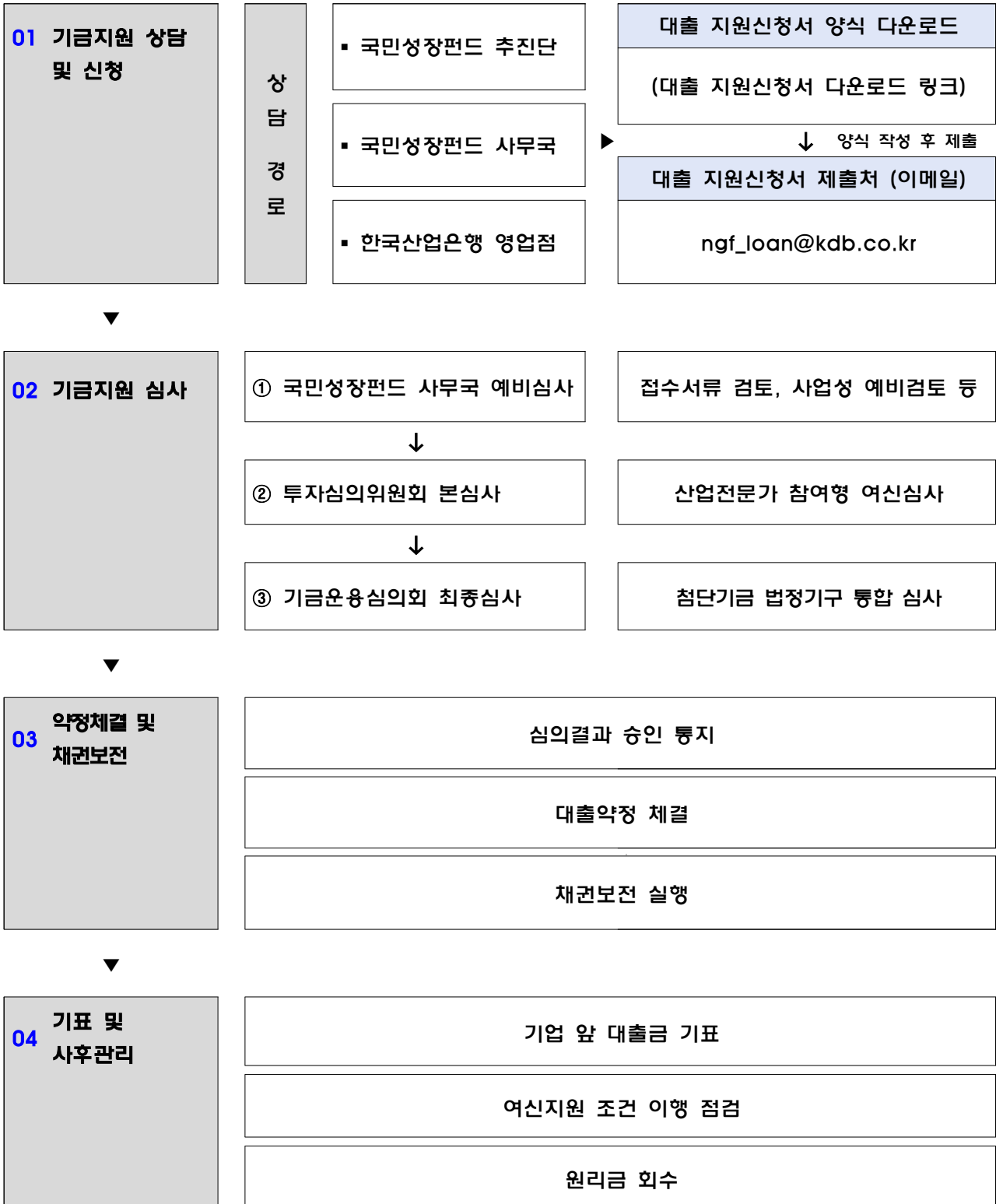
□ 지원 절차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사업공고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금 지원을 심사하며, 최종 지원 결정은 첨단전략산업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승인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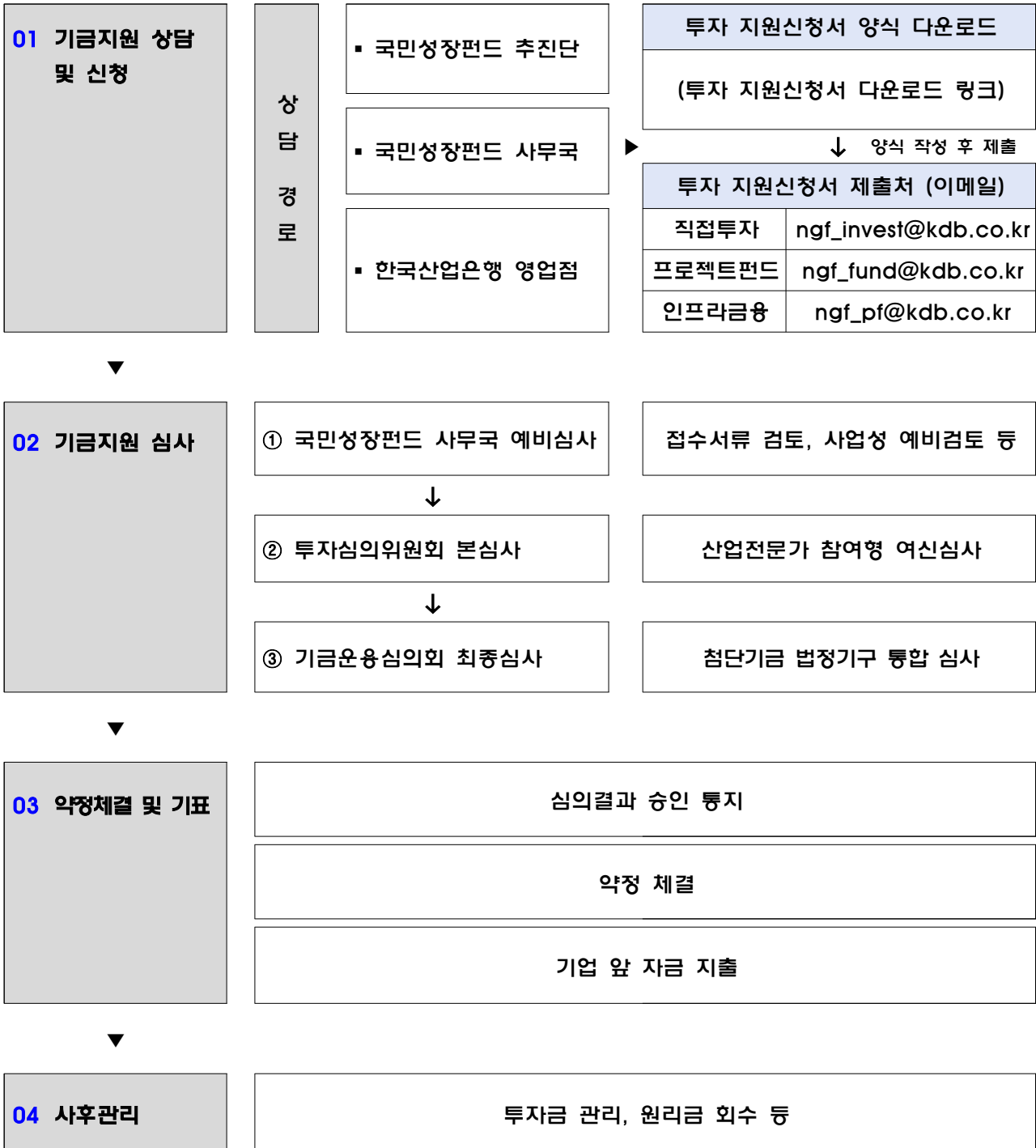


□ 지원 세부 절차

○ 첨단전략산업기금 대출·보증 지원절차



○ 첨단전략산업기금 직접투자(프로젝트펀드 포함)/인프라금융 지원절차



2 대출 및 보증

□ 개요

- **운용규모** : 총 50조원 ('26년 ~ '30년(총 5년))
 - 연도별 총 10조원 규모로 운용 예정(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자금용도** : 기업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유·무형 자산의 취득(계획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취급범위]

- 1) **공사중(예정)인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부동산 신축, 증·개축 또는 기계기구·설비 등의 제작, 개·보수
- 2) **영업용 자산 등의 구입 자금**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영업용 자산 취득
- 3) **기업인수자금**
 - 피인수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최초 취득할 목적으로 피인수기업이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지분증권 및 지분연계증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
- 4) **R&D 시설자금 및 보완투자용 시설자금**
 - 무형자산의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 항목을 포함하되 연도별 R&D 투자계획에 따른 매년 일정 규모의 투자

□ 지원방안

- **지원자금 종류 및 대출기한(계약기간)**

| | |
|-----------------|---|
| 대출(시설자금) |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 국민성장펀드 운용 취지 및 한정된 자금한도 등 감안 시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로 자금지원 예정 |
| 보증 | · 채무보증 및 지급보증, 15년 이내 |

- ※ 순수 신규 승인여신 대상(당·타행 대환, 리파이낸싱 및 기한연장 불가)
- ※ 운영자금, 연장조건부 단기시설자금 및 한도성 자금 취급 불가

- **지원통화** : 원화

- ※ 국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원화 우선 지원 예정

○ 지원방식

- 공동지원(원칙) : 협조융자, 신디케이션 등
- 단독지원(예외) :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

- (1) **정부정책 또는 공공성격**(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주관 사업 등)의 계획사업인 건
- (2) **대출 신청금액 기준 1천억원 이하인 건**
- (3) 기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단독지원 승인하는 건**
 - (예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단독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등

* 첨단전략산업기금 대출이 마중물 역할(Anchor) 수행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지원 활성화 유도

※ 산은 본체,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생산적금융)과의 협업 강화

○ 업체별 한도 : 최대 10조원(연간 2조원)

- 특정 업체에 총 운용액(50조원) 기준 20%(10조원) 초과 지원 방지
- 아래의 경우 업체별 한도 적용 배제

- (1) **정부정책 또는 공공성격**(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주관 사업 등)의 계획사업인 건
 - (2) 기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한도 적용 배제 승인하는 건**
 - (예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 * 메가프로젝트 : 첨단전략산업 내 파급효과(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유지·강화 등)가 큰 프로젝트로서,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과기부·산업부 등에서 추진 필요성 인정한 프로젝트

○ 건별 한도

- 공정성 유지를 위해 총 소요자금 기준으로 건별 지원 한도 설정

① 공동지원

| 구분 (상품별) | 일반 여신상품 | 중소·중견 우대상품 | 지역특화 우대상품 |
|-------------|----------------|----------------|----------------|
| 상품명 | 첨단도약 지원 프로그램 | 미래도약 지원 프로그램 | 지역도약 지원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계열대기업 등 | 중소·중견기업 | 계획사업 수도권 外 |
| 지원한도 |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 | 총 소요자금의 60% 이내 | 총 소요자금의 60% 이내 |

* 본 상품 지원 外 부분은 자기자금 및 타 기관(민간금융) 참여분으로 충당하며, 본 상품 승인 후 인출 전 승인 내용과 다른 사항(민간금융 참여분 감소 등) 발생 시 조건변경 (지원금액 상향) 불가 (자기자금으로 부족분 충당)

② 단독지원

| 구분 (상품별) | 일반 여신상품 | 중소·중견 우대상품 | 지역특화 우대상품 |
|-------------|----------------|----------------|----------------|
| 상품명 | 첨단도약 지원 프로그램 | 미래도약 지원 프로그램 | 지역도약 지원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계열대기업 등 | 중소·중견기업 | 계획사업 수도권 外 |
| 지원한도 | 총 소요자금의 60% 이내 |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

* 단독지원 사유 中 정부정책 또는 공공성격(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주관 사업 등)의 계획 사업인 건의 경우, 지원한도를 총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설정

○ 적용금리

| | |
|-------------|---|
| 실행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 유통수익률(민평3사) + (차주별)신용리스크프리미엄 · (우대금리) 중소기업 및 지역 우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의 경우 0.05%p 금리인하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에 계획사업 시설 투자하는 건의 경우 0.05%p 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①과 ② 중복 적용 불가(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유통수익률) · 고정금리(기본), 변동금리(제한적 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1년 또는 3년 적용, 변동금리를 위한 스왑 체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
|-------------|---|

□ 지원신청서 작성 포인트

- (적격성)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인지 확인
 -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인 기업, 주요 법령 위반자 등 금융거래 부적격 기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지원 타당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
 - 개별 기업의 역량 강화를 넘어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자료 작성
- (수익 전망) 기업의 구체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확인
 - 장기 공급 계약서, 구매 주문서 등 향후 발생할 매출이 명시된 확정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자료 작성
- (차입금 상환가능성) 기업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바탕으로 본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 본 대출 및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스케줄과 현금 흐름을 대조하여, 영업이익 내 상환 자원 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 필요

☞ 국민성장펀드 대출은 회사가 다시 상환해야 하는 “금융”으로, 계획사업 적합성,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 내 중요도, 기업의 대출금 상환 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담당자 연락처

| | |
|----------------------|-------------|
| 대출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 02-787-3932 |
| (모빌리티, 방산, 로봇, 이차전지) | 02-787-3933 |
| (바이오, 수소, 백신, 핵심광물) | 02-787-3934 |
| (콘텐츠, 인프라) | 02-787-3935 |

3 직접투자

□ 개요

- **운용규모(안)** : 총 15조원(첨단기금 7.5조원) ('26년 ~ '30년(총 5년))
 - 연 1.5조원 예상되나, 정책이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용
- **자금 용도** : 개별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보통주·우선주·메자닌을 활용 하여 유니콘 벤처투자, SPC·JV 투자 방식으로 맞춤형 투자 수행
 - 글로벌 첨단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 확보, 국가 경쟁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육성, 국내·외 M&A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지원 등

□ 지원방안

① 유니콘 벤처투자

| 구분 | 투자 구조도 | 주요 사례 |
|-------|--------|---|
| 투자 주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금, 재정,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유니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수행 |
| 방식 | | |
| 대상 목적 | | |

(사례1) 벤처기업의 제품 양산 및 차세대 제품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사례2) 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등을 위한 국내·외 기업 인수 용도의 유상증자 참여

[주요 심사 포인트 (벤처투자)]

- (지원대상) 민간 참여가 저조하고 리스크가 높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 벤처투자 중심 검토
- (사업성분석) 민간 인수가격, 전문 평가기관의 기업가치·기술평가 등을 통한 객관성·타당성 확보
- (지원검토) 기금 지원 타당성, 정부 정책 부합성, 글로벌 기술 경쟁력, 산업의 파급효과 등
- (회수가능성) 국내·외 상장, 인수합병 등 회수 가능성 종합 검토

② SPC·JV 투자

| 구분 | 투자 구조도 | 주요 사례 |
|-------|--------|---|
| 투자 주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금, 재정,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주요 글로벌 첨단기업 등에 대한 직접 투자 수행 |
| 방식 | | |
| 대상 목적 | | |

(사례1) 글로벌 반도체·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 확보를 위하여 SPC 설립 참여

*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시설, 바이오 CDMO 생산공장 등

(사례2) 기업간 인수합병 혹은 합작 신설될 첨단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JV 설립 참여

[주요 심사 포인트 (SPC·JV 방식)]

- (지원대상) 투자 효과가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중심 검토
- (사업성분석)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성 및 구조 검토, 인허가 등을 통한 사업 가능성 검토
- (지원검토) 기금 지원 타당성, 민간 투자자의 독자적 사업 운영 가능성, 산업의 파급효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밸류체인 중요성,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고용 창출 등
- (회수가능성) 금융 구조(금융리스 등), 배당 계획, 지분 매각 방안(Call-Put-Option) 등 종합 검토

□ 지원신청서 작성 포인트

- (적격성)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인지 확인
 -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인 기업, 주요 법령 위반자 등 금융거래 부적격 기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지원 타당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
 - 개별 기업의 역량 강화를 넘어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자료 작성
- (영업 계획) 기업의 구체적인 영업 계획 확인
 - 주요 고객사 정보, 장기 공급 계약서, 구매 주문서 등 향후 영업 계획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작성
- (기술경쟁력) 핵심 기술 및 경쟁 우위, 향후 기술 확보 계획 등
 -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과 주요 경쟁사와 비교한 장단점 기술, 향후 기술 확보 로드맵 등을 기술 경쟁력 관점에서 자료 작성

☞ 국민성장펀드 직접투자는 기금 지원 적격성 및 타당성, 영업 계획, 기술 경쟁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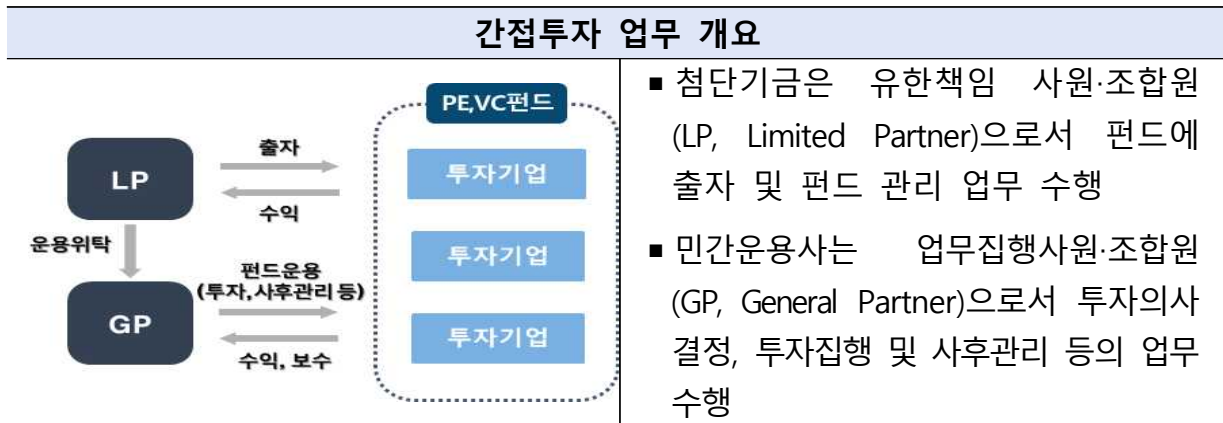
□ 직접투자 담당자 연락처

- 직접투자팀 (팀장) 02-787-5869
(팀원) 02-787-5862

4 간접투자

□ 개요

- 운용규모(안) : 총 35조원(첨단기금 7.5조원) ('26년 ~ '30년(총 5년))
- 자금 용도 :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기금을 매종물로 민간자금을 모집(펀드)하여 필요한 산업에 자금을 공급(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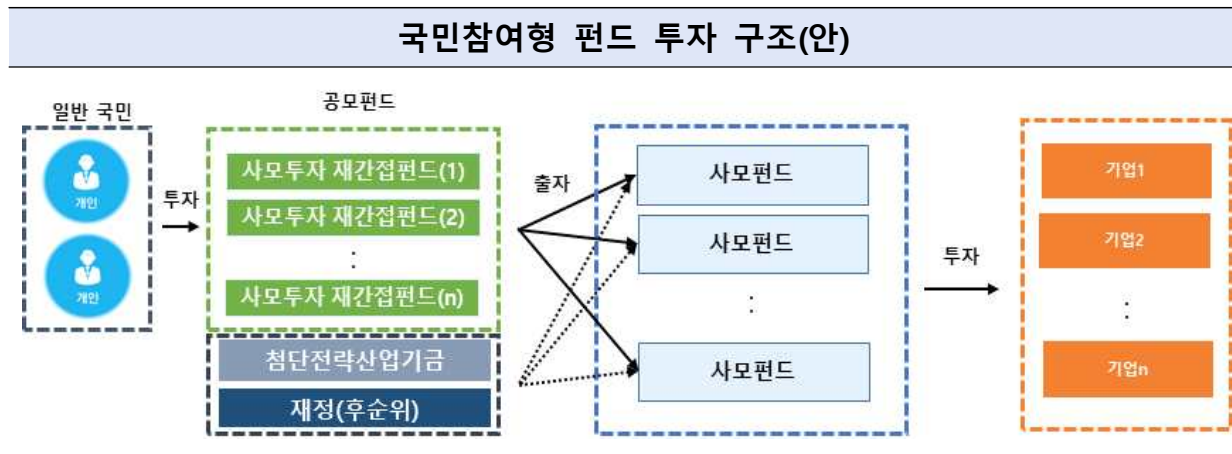


□ 지원방안

| 구분 | 주요내용 |
|------------|--|
| 정책성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산업은행의 개별 블라인드 정책펀드(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펀드 등) 및 프로젝트펀드를 정책성펀드로 통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블라인드펀드) 산업지원(범용), 집중지원(스케일업, AI·반도체, 지역전용)으로 세부 분야 조성 - (프로젝트펀드) 기금 자체 펀드 및 공동투자 펀드* 조성 <p>* 정책출자자(기금, 산업은행)가 출자한 펀드와 공동투자</p> |
| 국민참여형 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펀드 |
|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유망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펀드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의 펀드 |

□ 국민참여형 펀드

-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장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 예정
 - '26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으로,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도 펀드에 투자 가능
- 일반 국민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재간접펀드(공모펀드) 형태로 투자기회 및 후순위 보장을 통해 20% 이내 원금 보전, 세제혜택 등 투자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제공



□ 지원신청서 작성 포인트

○ (운용사 현황) 운용사 및 운용인력 현황 확인

- 운용사의 현재 운용자산(AUM), 청산펀드 투자 실적, 운용인력의 경력사항 및 투자실적 상세히 기재

○ 그 외 사항은 직접투자 지원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프로젝트펀드)는 지원 운용사의 운용 중인 펀드 현황, 투자실적, 운용인력 경력 및 실적 등과 기금 지원 적격성 및 타당성, 영업 계획, 기술 경쟁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간접투자 담당자 연락처

- 정책성펀드(블라인드펀드), 국민참여형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로부터 투자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및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선정된 민간운용사(PE, VC, 자산운용사 등)와 직접 접촉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kdb.co.kr (은행소개>홍보센터>새소식>공지사항)

** ngf.kdb.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5 인프라금융

□ 개요

- 운용규모(안) : 총 50조원(첨단기금 10조원) ('26년~'30년(총 5년))
- 자금 용도 : 첨단전략산업기업을 위한 인프라(AI데이터센터, 에너지 공급, 전력망 설비 및 용수처리시설 등) 구축

□ 지원방안

- 지원자금 종류 및 지원기간

| | |
|------|---------------------------|
| 시설자금 | · 20년 이내 |
| 투자 | · 주식 및 주식관련채, 사모수익증권 인수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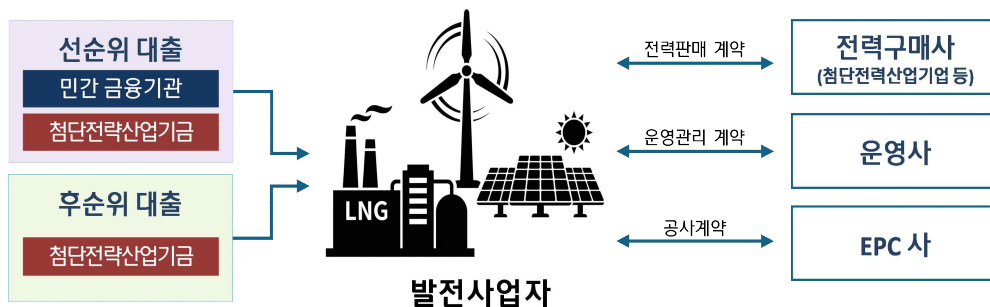
- 순수 신규 승인 여신 대상(단, 계획사업 확장에 따른 리파이낸싱 가능)
- 운영자금 및 한도성 자금 취급 불가

- 지원방식

- 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협조융자, 신디케이션 등) 원칙
- 특정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기반한 프로젝트금융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업금융 등 타 방식 지원도 가능
- 지분투자, 후순위대출 외 선순위대출 등 타 방식 지원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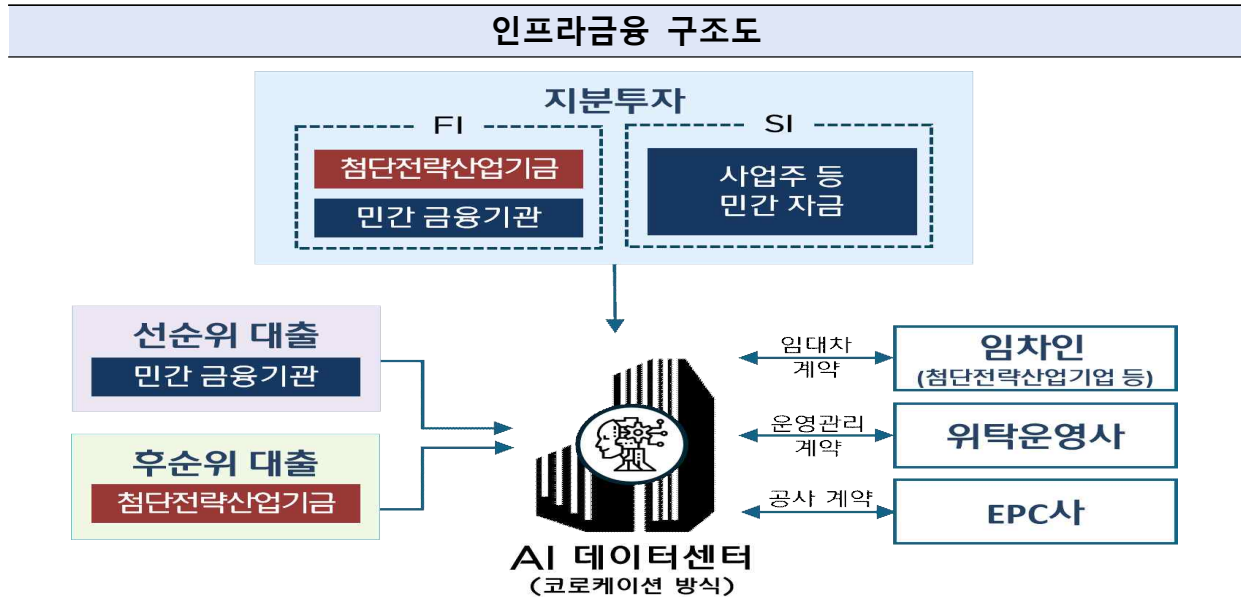
① 발전, 환경 등

인프라금융 구조도



(사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단지 내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에 인프라금융 지원

② AI, 데이터센터 등



* 코로케이션 방식 :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임차인의 수요에 맞게 임대·운영

(사례) AI 수요 급증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 신축 목적의 인프라금융 지원

[주요 심사 포인트 (인프라금융)]

- **(지원대상)** 첨단전략산업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해당 여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
 - **(사업성분석)**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 시장성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수익성 분석
 - **(리스크분석)** 주요 리스크 요인(출자자, 건설, 운영, 기술 등) 및 리스크 완화방안 분석
 - **(회수가능성)** 채권 보전 방안, 배당 계획, 지분 매각 방안 등 종합 검토
- ※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검토서(또는 이에 준하는 검토서) 징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지원신청서 작성 포인트

- (지원 타당성) 첨단전략산업 관련기업 대상 확인
 - 계획사업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당 여부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의 관련성을 기재하고, 계획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
- (계획사업 내용) 구체적인 계획사업 내용과 진행 경과 확인
 - 계획사업(건설, 시설 구입 등 본건 신청 자금이 직접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주요 사업 계약(실시협약, 운영계약, 장기판매계약 등)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기술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소요자금의 적정성과 조달계획 확인
 - 소요자금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대해 설명
 - 소요자금 조달계획과 조달 가능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본건 신청 자문에 대해 희망하는 지원 방식을 기술
-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 계획사업의 시장성 및 회수가능성 등 확인
 - 시장성(수요 동향, 매출 구조 등), 기술적 타당성(생산기술의 안정성 등), 재무적 타당성, 상환 가능성(추정 현금흐름표 작성), 민감도(시나리오 별 DSCR 계산) 등에 대한 분석
 - 계획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완화 방안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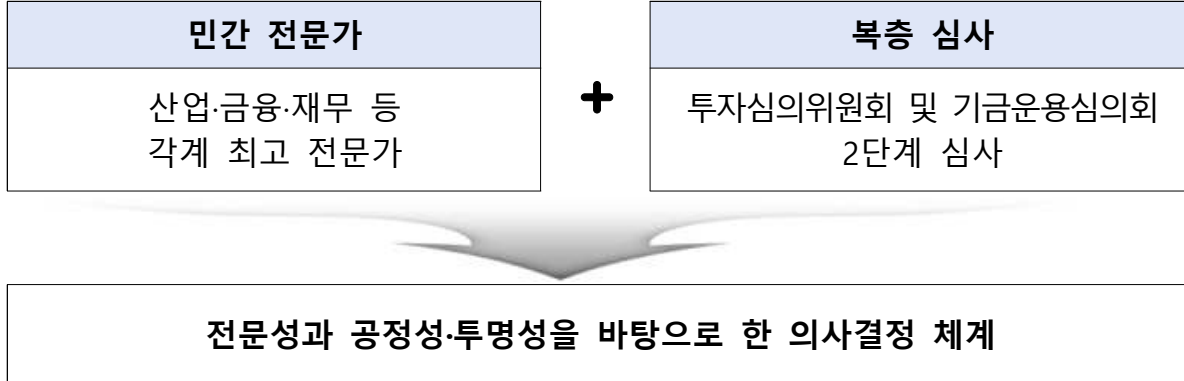
☞ 국민성장펀드 인프라금융은 계획사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관성, 소요 자금 및 조달계획,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담당자 연락처

- 인프라금융 (AI 데이터센터 등) (팀장) 02-787-5868
(팀원) 02-787-5867
(발전, 환경 등) (팀장) 02-787-5855
(팀원) 02-787-5859

Ⅲ. 국민성장펀드 심사 절차

□ 개요



□ 심의 · 의결기구

| | |
|---------------------------------|---|
| 투자심의 위원회 (1차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분과로 구분하여 운용되며, 산업·금융·재무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업종 기준 |
|---------------------------------|---|

| 기금운용 심의회 (최종 의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부, 한국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추천기관</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추천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회 소관 상임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융위원회</td>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각 1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경제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학기술정보통신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한상공회의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산업은행</td> </tr> </tbody> </table> | 추천기관 | 추천인원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2인 | 금융위원회 | 각 1인 |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산업은행 |
|---------------------------------|--|------|------|-------------|----|-------|------|-------|-----------|-------|---------|---------|--------|
| 추천기관 | 추천인원 | | | | | | | | | | | | |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2인 | | | | | | | | | | | | |
| 금융위원회 | 각 1인 | | | | | | | | | | | | |
| 재정경제부 | | |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 | | | | |
| 산업통상부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 | | |
| 대한상공회의소 | | | | | | | | | | | | | |
| 한국산업은행 | | | | | | | | | | | | | |

□ 세부 절차

| 예비심사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대상 여부, 계획사업의 타당성 등 예비검토 ·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앞 부의 | |

| 1차 심의 | 투자심의위원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심의회 최종 의결 전 자금지원의 적정성·타당성 사전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 최종 의결 | 기금운용심의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최종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 승인 통보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 약정체결, 채권보전, 자금기표 등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실무 개시 | |

※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본이 공동지원(대출, 투자 등) 하는 경우, 민간자본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주요 심사항목

| | |
|-----------------------------|--|
|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 방향과의 목적부합성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의 파급효과 ·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
|-----------------------------|--|

+

| | |
|--------------------|--|
| 계획사업의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 · 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 및 시장성 · 추정 현금흐름 및 수익성 |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 산정 근거 · 자금 모집방식 및 모집현황 |
| 금융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참여기관 및 약정조건 · 투자금 회수·차입금 상환 가능성 |
| 사업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 |

정성적·정량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

IV. 자주 묻는 질문(60문 60답)

1 개념

1. 국민성장펀드란?

-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 국은 보조금 및 정부지원 등 국가단위 총력전 진행 중
 - * (美) 칩스법, IRA법을 통해 총 70조원 보조금 지급안 추진→고율관세 부과 병행
 - (中) 반도체에 562조원 펀드 투자(중국제조 2025), (日) 400조원대 경제대책 등
- 이에 대응하여,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대규모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임
-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범정부 정책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 그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투융자 및 저리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식을 총동원하여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특히,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등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
- ☞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 첨단산업 중심의 대표 경제성장정책임

◆ 150조원(공공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의 자금을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여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준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 민간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
(26년 1조원 예산반영)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기금운용심의회
(첨단전략산업기금 심의)

집중
지원

메가프로젝트 / 밸류체인 / 지역

투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식

| | | | |
|-------|---------|-------|-------|
| 지분 투자 | 인프라 투융자 | 간접 투자 | 국민 참여 |
|-------|---------|-------|-------|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

(대규모 자금 +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토탈솔루션)

* 예) 반도체 공장 라인신설 시설자금,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앞 에너지공급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① 미래 20년 新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Target

-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90개 기술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핵심광물, 콘텐츠

②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

③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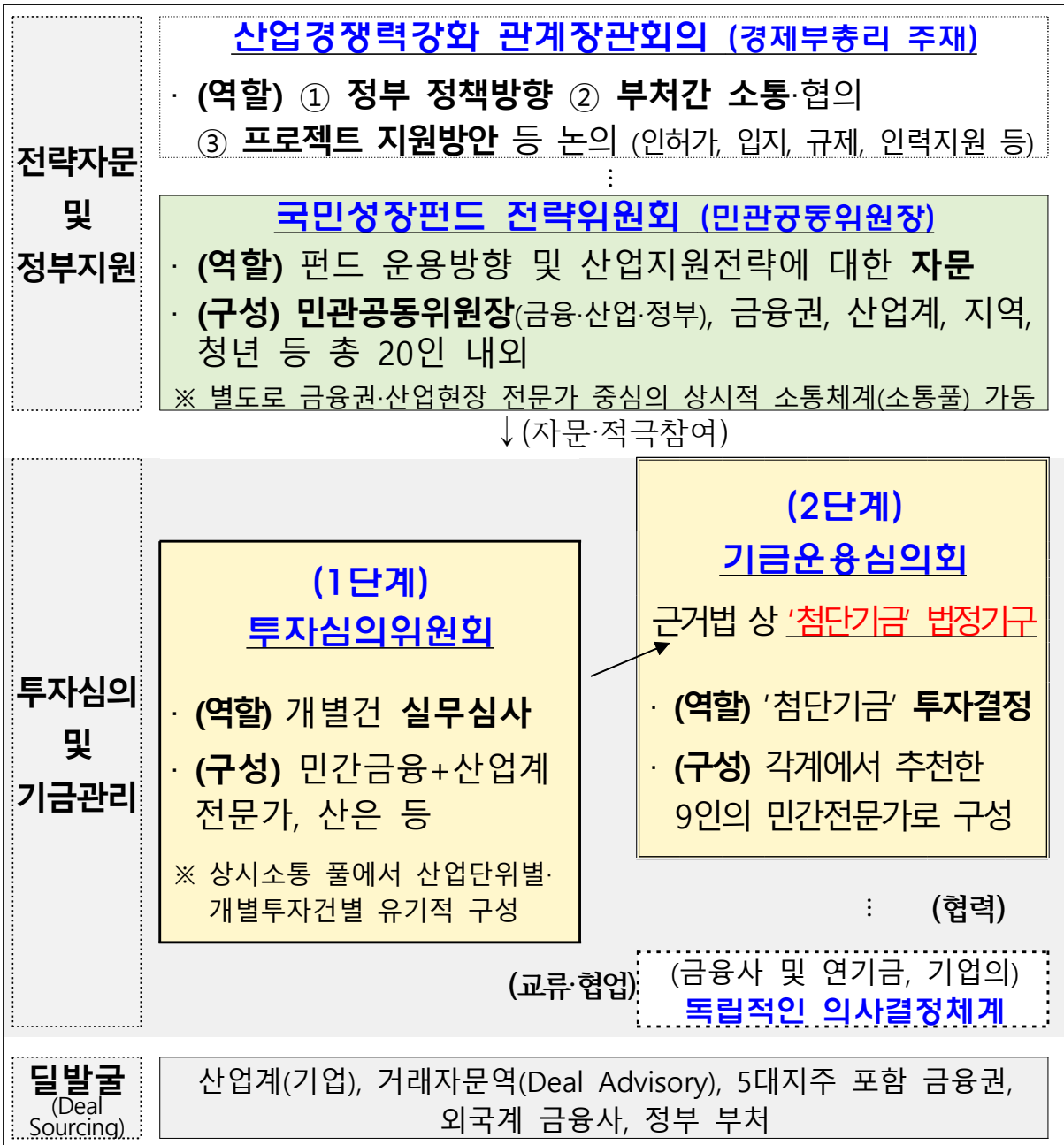
2. 국민성장펀드는 하나의 펀드인지 여러개의 펀드인지?
누가 운용하는 것인지?

- 국민성장펀드는 개별 펀드(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15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첨단전략산업 자금지원 정책임
 - 이는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프로젝트 참여 75조원을 더한 개념으로,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민간자금과 연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대출, 투자, 인프라금융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함
-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기금운용심의회, 투자심의위원회 등 전문적이고도 공정·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거쳐 운용방향 및 개별적인 투·융자 결정
 - 기업·프로젝트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직접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거나 대출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고
 - 일부는 간접 투자방식으로서, '민간운용주체'들이 운용하는 여러 펀드에 출자하게 됨

참고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개요

- ◆ 향후 20년을 이끌 유망한 미래성장엔진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 최고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 **(전문성)**
 - 각 계 전문가와의 상시적 소통풀을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 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
- ◆ 운용방향 자문과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체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풀에 지속적 환류 **(공정성 및 투명성)**



3. 집행-회수-청산 등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됨
 - 5년(‘26~‘30년)간 年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지분투자, 펀드를 활용한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저리대출의 방식으로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지원

- (집행)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2단계에 걸쳐 심사
 - 투자심의위원회는 산업계와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민간) 등으로 구성하여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 * 신청기업 및 실무조직에서 작성·검토한 사업개요 및 재무·손익 현황 등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이 활용되는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

- ※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공동대출에 참여, 공동지분투자 등)은 국민성장펀드와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으로 선출자하는 개념 아님)

- ‘집행’의 의사결정(어떤 프로젝트 또는 펀드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제공할지 여부 결정)이 향후 5년간 일어날 수 있으며
 - 시설투자 및 SOC사업의 기성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될 것임
 - ☞ ‘반드시 5년내’에 모든 시설투자가 완료될 이유는 없는만큼 집행 자체는 5년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음

- ※ 이와 별개로 민관의 자문기구로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두어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운용 고도화

□ (회수) 개별 집행건에 대해서는 투자방법 및 진행상황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짐

○ (직접투자) 주주간 협의(피투자기업, 기금, 공동투자자)를 통해 투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회수

* 피투자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산은법 제29조의9 ⑥항) 또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음

○ (간접투자) 펀드의 운용을 맡은 개별 운용사가 판단하여 최적 시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회수*

* 피투자기업 우선매수권 부여(법상 의무는 아님), 세컨더리펀드에 매각 등

○ (인프라투자, 저리대출) 자금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공장건설, 인프라 시설 건설) 운영상황에 맞추어 원리금 회수

☞ 민간자금은 개별 투자자 또는 여신제공주체에게 귀속되며 기금분은 기금계정 누적하여 기금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활용

□ (청산) 국민성장펀드 운용기간 종료 후 청산시에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

* 개정 산은법 부칙 제3항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
· 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4. 국민성장펀드가 정책금융이라는데, 정책금융이라는데 뭔지?

- 정책금융은 국가정책적 필요성이 높거나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사업성·수익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 민간금융이 높은 위험성·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정책금융기관이 보완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 민간에서 과소공급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민간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이를 마중물로 한 민간자금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 우리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금융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운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장기·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하여,
 -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준비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제공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 산업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정책

② 지원대상

5. 메가프로젝트란? 구체적인 메가프로젝트의 예시는?

- 메가프로젝트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중견, 전후방기업 등 해당산업의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프로젝트로서,
 -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산업계 기술발전 및 고용증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임
 - 이러한 메가프로젝트에는 금융 외에도 세제·규제·인허가·R&D 등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이른바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임
- 예컨대 GPU 등 첨단반도체가 집적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대규모·최첨단 반도체 공장건설을 통한 반도체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의 발전도모 등이 메가프로젝트의 예시

6. 메가프로젝트에 직접 연관된 기관이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지원대상이 되는건지?

□ 메가프로젝트 지원시 원청(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인프라 전반 지원 가능

○ 직접적으로는, 메가프로젝트 협력업체가 시설투자 추진시 프로젝트 지원과 별도로 국민성장펀드에서 자금지원이 가능

○ 간접적으로는, 산업과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전후방 연관 효과로 연관 협력업체의 원청과의 계약·발주가 증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효과 발생

□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은 대기업이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약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등

* 대기업이 임의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특례조건의 대출보증 지원

○ 기존 기관과 적극 협업을 통해서도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음

7. 첨단전략산업을 영위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국민성장펀드는 「산은법」상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인
 - 「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첨단전략산업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및 그 벨류체인 내 기업에 폭넓게 지원 가능
 - 현재 관련 법에 의하여 12개 산업 및 90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신청)기업이 (기술과 무관하게) 12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금지원 검토 가능 대상임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시행령 - 콘텐츠·핵심광물 등)
 - 다만, 개별건의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산은법 개정(12.10일 시행)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별첨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업종 세부사항

□ “첨단전략산업기업” 대상업종 (산은법 제29조의7 제2항)

| 관련법 | 지원분야 | 세부기술 |
|---------------------|-------------|--|
| 첨단전략 산업법 | 반도체 | 1.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2.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4.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5.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6.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7.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8.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하는 FO-WLP, FO-PLP, FO-PoP, SiP 등 공정·조립·검사기술 |
| | 디스플레이 | 1.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2.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3. 크기 30 μ m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4. 크기 1 μ m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
| | 이차전지 | 1.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2.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니켈함량 80% 초과) 3.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 | 바이오 | 1.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다회용 바이옱터 세포배양: 1만리터 이상) 2.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80% 이상) |
| | 로봇 | 1.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 |
| | 방산 | 1. 유·무인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 |
| 조세특례 제한법 | 반도체 |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나. 차세대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다. 고속컴퓨팅을위한SoC설계및제조(7nm이하)기술 라. 차세대디지털기기SoC설계·제조기술 마. 고성능마이크로센서의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바. 차량용반도체설계·제조기술 사. 에너지효율향상반도체설계·제조 기술 |
| 조세특례 제한법 (계속) | 반도체 (계속) | 아. 에너지효율향상전력및전력관리반도체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자. 차세대디지털기기·차량용디스플레이반도체설계·제조기술 차.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카.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

| 관련법 | 지원분야 | 세부기술 |
|---------------------|-------|--|
| | | <p>타.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p> <p>파.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 · 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p> <p>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p> <p>거.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p> <p>너.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p> <p>더.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p> <p>러.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p> <p>머.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p> <p>버.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p> <p>서.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p> <p>어.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p> <p>저.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p> |
| | 이차전지 | <p>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p> <p>나. 고성능리튬이차전지부품·소재·셀및모듈제조기술</p> <p>다. 사용후배터리평가및선별기술</p> <p>라. 사용후배터리재활용기술</p> <p>마. 차세대리튬이차전지부품·소재·셀및모듈제조기술</p> <p>바. 하이니켈양극재제조기술</p> <p>사. 장수명음극재제조기술</p> <p>아. 이차전지분리막및전해액제조기술</p> <p>자. 이차전지부품제조기술</p> <p>차. 양극재용고순도금속화합물제조·가공기술</p> |
| | 백신 | <p>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p> <p>나. 비임상 시험 기술</p> <p>다.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p> <p>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p> <p>마.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p> <p>바.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p> <p>사.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p> |
| | 디스플레이 | <p>가.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p> <p>나.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p> <p>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p> <p>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p> <p>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p> <p>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p> <p>사.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p> <p>아.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p> |
| 조세특례 제한법 (계속) | 수소 | <p>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p> <p>나. 탄소포집청정수소생산기술</p> <p>다. 수소연료저장·공급장치제조기술</p> <p>라. 수소충전소의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부품제조기술</p> <p>마. 수소차용고밀도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p> <p>바. 연료전지전용부품제조기술</p> |

| 관련법 | 지원분야 | 세부기술 |
|-----|-------------|---|
| | | 사. 수소가스터빈(혼소·전소)설계및제작기술 아. 수소환원제철기술 자. 수소저장효율화기술 차. 수소처리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 |
| | 미래형 이동수단 |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나.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라.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마.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
| | 바이오 의약품 | 가.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다. 비임상 시험 기술 라.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마.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사.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아.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 | 인공지능 | 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나.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다.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라.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기술 마.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 “첨단전략산업기업” 업종추가* (산은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 관련법 | 분야(업종) | 세부내용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
|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 핵심광물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

8. 12개 업종이 지원가능 대상이라고 하는데 인정되는 '업종의 범위'가 궁금한데, 예컨대 '바이오' 업종의 경우 국가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에 속하는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자원, 바이오환경산업 등도 지원 대상인지?

- 「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과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정한 12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금지원 검토 가능
- 12개 산업별 분류코드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개별건의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9. 해외진출 M&A 등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는 투자건의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 M&A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개별건의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10. 창업·벤처·중소기업도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별도 제한이 없으며,
 - 오히려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원 등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지원방향 중 하나*임
 - *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①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 ②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③ 지역성장을 주된 지원방향으로 설정
 - 창업, 초기(벤처, 중소), 중기(중견) 등 기업의 성장 주기별 직·간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
- 다만 모태펀드 및 각 부처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섹터펀드' 등과 영역 구분하되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협업을 강화할 것임
 - 모태펀드는 창업초기·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스케일업 및 대규모 인프라·설비투자 지원
 - 각 부처별 섹터펀드(바이오, 콘텐츠 등)에 유망 투자건이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 매칭 등 지원하여 협업방안 논의
-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여타 정책펀드의 지원을 중복하여 수혜하려는 경우,
 - 운용 효율성과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지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지양)

11. 엔비디아 등 첨단전략산업을 영위중인 해외 유망기업에도 투자·지원이 가능한건지?

-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보증채·재정 등 국가 지원에 기반한 정책자금이므로,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지원에 별도 제한은 없음
 - 다만, 개별건의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결정

12.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지원비율이 있는지?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의무지원 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되,
 -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 구체적으로,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위주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첨단 전략산업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③ 지원방법

13. 국민성장펀드 신청은 언제/어디로/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지원(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저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ngf.kdb.co.kr)에 안내된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가능
 - 산업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하나, 공식적인 서면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
- * ▲대출: ngf_loan@kdb.co.kr, ▲직접투자: ngf_invest@kdb.co.kr, ▲프로젝트펀드: ngf_fund@kdb.co.kr, ▲인프라금융: ngf_pf@kdb.co.kr

- 또한 정부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통해서도 국민성장펀드 자금수요를 신청할 수 있음

14. 국민성장펀드 참여/지원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언제든지 가능한건지?

- 국민성장펀드 출범(12/10) 이후 언제든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연중 수시로 검토 및 심사 예정

14-1. 지금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하면 늦지 않는지?

-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운용되는 상시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요를 선착순 개념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수요사업을 신청받고 있음

15.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출 관련 신청·제안시 일정한 요건이 있는지?(프로젝트 개발단계, 인·허가 취득, 총 사업비의 50% 이상 기 모집 등)

- 국민성장펀드는 「산은법」 등에서 지정한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지원 가능하며,
 - 개별 프로젝트별 진행상황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다만, 투자·대출의 실행을 위해서는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전문가, 사무국으로 구성된 투심위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게 되고,
 - 이는 신청기업 및 실무조직에서 작성·검토한 사업개요, 재무·손익 현황 등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하는 과정임
 - 계획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취득 완료, 총 소요 자금의 20~50% 수준 자기자금 조달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심사를 거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6. 신청 시, 개별 건 심사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 심사 구조 등 감안할 때, 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될 예정
- 다만, 계획사업의 특징, 규모, 인허가 규제 등 각 개별 건의 조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단축될 수 있음
- ※ 수요가 몰리는 경우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됨

4 국민참여형펀드

17. 국민성장펀드에 개인투자자도 참여 가능한지? 참여 방법은?

-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개인투자자도 참여 가능
 - '26년 2~3분기 중으로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펀드 판매 예정
 - 구체적인 참여 절차 및 판매 일정 등은 추후 정책발표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 기본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은 기관투자자(연기금 및 민간금융기관)를 의미하는 것이나 국민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첨단산업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자 하려는 것임

17-1. 국민참여형 펀드에 참여 가입제한이 있는지?

-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참여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참여 가능하고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국민성장펀드 가입은 가능하나
 - 세제혜택(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에서는 제외 예정 ('26.1.26일 재정부 세제지원안)
 - 관련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으로 개정완료 시 최종 내용이 확정될 예정임

18. 국민참여형 펀드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혜택(세제 등)이 있는지?

□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분으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후순위 출자된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약 20%)함으로써

○ 민간투자자는 개별 프로젝트가 일정수준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이 후순위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보전이 가능

□ 이외에도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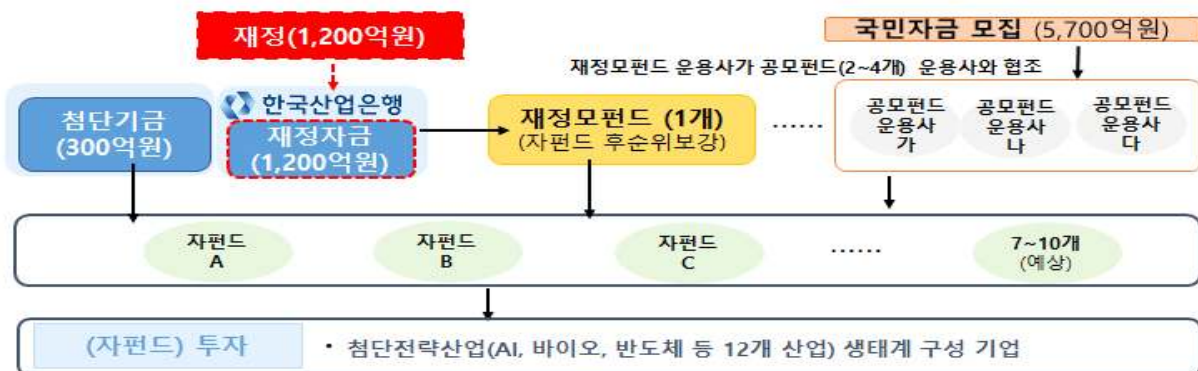
① (소득공제) 일반 국민의 투자금액 구간별 10~40%* 소득공제 적용, 3년 미만 투자시(상장시장 매도) 세제혜택 전액환수

*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천만원~7천만원) 10%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자 보유기간 중 발생한 집합투자증권 배당*에 대해 9% 분리과세(5년 이내 기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 예 : 펀드가 투자한 채권·메자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인프라 투자 임대료 수익 등

** 보유기간 5년 동안 적용 → 3년 양도제한 기간 이후 매매시 매수자도 2년간 가능



☞ 국민은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수행하여 리스크가 분산되고 개별자펀드의 손실에 후순위 보강 (이중 리스크 분산·방지장치)

5 지방

19. 지방 소재 기업이나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우대하는 사항이 있는지? 지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인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임
 - 전체 지원금액인 150조원 중에 40% 이상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 특히 기금운용심의회 과정에서 지역산업여부를 감안하고 지역전용 펀드를 5년간 1조원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 지원 선정 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고려하나, 각 지역별로 비율을 배분하고 있지는 않음

20. 지방에 40%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원방식별(직·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저리대출) 배분액이 정해져있는지?

-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조성규모의 40% 이상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나,
 - 지원방식별 배분액은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 다만, 지역에는 AI데이터센터 및 송배전망, 발전소 등 인프라 투융자 관련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1.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희망 기업의 지원신청서 또는 제안서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음
 - 지자체가 별도로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ngf.kdb.co.kr)의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여 사업개요, 희망 투자내용, 지원 필요성, 사업 세부설명 등을 포함하는 내용 작성
 - 작성된 제안서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도 제출할 수 있음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실무 검토를 진행하여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업과 소통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⑥ 지원방식

21. 직접투자 방식과 간접투자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지원 대상이 다른건지?

- 직접투자 방식과 간접투자 방식의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영위 기업 등으로 동일하나, 투자집행 방식에서 차이
 - 직접 지분투자 방식은 투자 집행시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등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투자여부·투자규모·투자방식 등이 직접 결정됨
 - 간접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이 미정인 상황에서 민간운용사의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 국민성장펀드가 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투자 집행
- 통상 직접투자방식은 가능성 있는 성장기업에 기금운용심의회가 결정하여 더 큰 규모로 집중투자 되는 특성이 있고,
 - 간접투자방식은 다양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민간운용사가 분산하여 투자하게되는 특성이 있음

22. 인프라 투·융자의 경우 지원 대상인 '인프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지원방식과의 차이점은?

- 인프라 투·융자 지원대상인 '인프라'는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공급하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설비를 의미
 - 구체적인 지원대상 예시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구축사업임
- 인프라 투·융자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PF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 일반적인 기업대출이 해당 기업의 신용, 담보 등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점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경우 대출금리는 저리대출보다 높지만, PF방식으로 사업규모 및 추진기업(SPC포함)의 담보 및 신용도 대비 많은 규모의 자금지원이 가능함

23. 저리 대출의 금리 수준, 지원 대상, 신청방법은?

- '26.1월 현재 저리 대출의 금리수준은 통상 약 3% 내외 수준으로,
 - '국고채 유통수익률(민평3사)'을 하한으로 하되 이에 차주별 신용 리스크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결정됨

- 지원대상은 「산은법」 등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및 관련 밸류체인과 연관된 기업들임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시행령 - 콘텐츠·핵심광물 등)

- 신청방법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및 사무국, 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방법 안내·지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음
 - * 기금신청, 기금지원 심사, 약정 체결, 대출금 지출 등

24. 민간 금융권도 저리대출에 함께 참여하는지?

-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 공급 예정

- 시중은행은 해당 프로젝트의 저리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소요자금 등에 대하여 공동지원 대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나,
 - 대출금리가 국민성장펀드의 저리대출과 상이할 수 있음

25.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성장펀드는 보증방식으로는 지원하지 않는지?

- 근거법인 '산은법'에 의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국민성장펀드도 보증을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 다만 신보·기보 등 이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두텁게 존재하고 있는만큼, 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조하지는 않았음

- 자금수요가 존재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친다면 보증을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하며,
 -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한 첨단산업 영위 대기업을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약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 협력업체 등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는 등
 - * 대기업을 임의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특례조건의 대출보증 지원
 -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보증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7. 거버넌스·의사결정

26. 국민성장펀드의 주무부처는?

-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국정과제*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나,
 - *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 외에도 규제·세제·인프라·R&D·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범부처 성장정책이자 토털솔루션 프로그램임
-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효율적 운용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민간 파견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 여러 부처*가 함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해나갈 계획
 - * 산업부, 과기부, 재경부, 기후부, 중기부, 문체부, 방사청, 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등 10개 부처에서 15명 파견

27.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투자 의사결정 절차는?

-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절차로 진행
 - 1단계는 해당 산업 전문가, 민간금융·정부·산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개별 투자건 심사
 - 분과별로 고정된 전문위원과 함께 산업별(사업별)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하여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
 - * 금융권·산업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광범위한 투자심의위원회 풀을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추어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
 - 1단계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2단계로 첨단전략기금의 법정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9인)*에서 최종 심의·의결
 - * 국회 추천 2인, 정부부처 추천 5인, 대한상의 추천 1인, 산은 임직원 1인
- ※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공동대출에 참여, 공동지분투자 등)은 국민성장펀드와 협업하되 개별의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으로 선출자하는 개념 아님)

28. 국민성장펀드 관련 정부 내 조직과 산은 내 조직의 역할상 구분은?

- 산은 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조직으로서,
 - 신청된 개별 프로젝트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 및 사업 내용 보완 등을 지원하며,
 - 타 금융사와 연계하여 공동대출·투자 주선 등 금융지원 실무 역할 수행

- 정부 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관계부처합동 조직으로서,
 - 국가 차원에서 관련부처가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방향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역할
 -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기금운용심의회 등 국민성장펀드의 거버넌스를 정책·전략 차원에서 보좌하면서,
 -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별 규제·재정·세제·인력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고,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조하여 사업별 금융구조(사업별 재정 후순위 보장계획 포함)를 검토하고 적극행정(면책 등) 지원

<참고>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부처간 협업체계

(1) 프로젝트 발굴

- '국민성장펀드'의 투자프로젝트는 산업현장, 금융업권 및 사업부처에서 효과적으로 인지 ☞ 각 주체가 익숙한 채널 최대한 활용
 - 사업부처는 '추진단'을 통해 사업신청 및 검토
 - 산업계 및 거래자문역*(Deal Advisory)은 '사무국' 및 '추진단'에 프로젝트 신청 (기존네트워크 적극 활용)
 - * PwC, Deloitte, EY, KPMG 등 주요 회계법인 또는 McKinsey, BCG 등 컨설팅펌 등
 - 산은 및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Alliance'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국민성장펀드-금융권간 협업 지원
- ※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과 사무국은 신청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청채널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관리

(2) 국민성장펀드-정책기관·펀드 간 협업 추진

- [관계부처(추진단)] 중기부 '모태펀드', 각 부처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섹터펀드' 등과 영역구분하되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협업 강화
 - 모태펀드는 창업초기·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스케일업 및 대규모 인프라·설비투자 지원
 - 각 부처별 섹터펀드(바이오, 콘텐츠 등)에 유망 투자건이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 매칭 등 지원하여 협업방안 논의
- [정부-정책금융]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추진
 - * 구성 : 금융위(부위원장 주재)-사업부처-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등)
 - 예) 국민성장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은 대기업이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약 프로그램* 마련하여 중소 협력업체 등 지원
 - * 대기업이 임의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특례조건의 대출보증 지원

29.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는?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 국회 및 정부부처, 대한상의, 산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임

「산은법」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산은법 시행령」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0.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공개하는지?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기금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음

31. 기금운용심의회와 투자심의위원회는 어떤 주기로 열리는지?

- 기금운용심의회와 투자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되,
 - 시일이 촉박한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

32. 국민성장펀드의 감시나 통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을 받은 기업(프로젝트)과 수익률 등은 공개가 되는 건지?

- 국민성장펀드는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 금융·산업계 및 정부가 참여하여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예정
- 특히, 국회는 기금운용심의회 참여(국회 추천 2인), 예결산 심사, 기금채 발행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 운용현황·성과에 대해서도 운용사·기업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 예정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회의 통제 수단)

□ 국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① 참여 및 예결산^②, 기금채 발행 동의^③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함

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9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인사

*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 및 개별투자건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법정기구

② '26년 1조원 등 관련 재정투입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

③ 매년 15조원에 달하는 기금채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권

□ 아울러, 국회 등에도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가진 거버넌스 확립)

□ 전문성^①과 투명성^②, 공정성^③을 확보하면서도 가능한 단순한 거버넌스(신속한 의사결정) + 산업 육성전략^④ 및 정책방향 반영

① **(전문성)**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등 투자결정과정에서 산·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권·산업계 전문가 참여

② **(투명성)** 국회 등에 의한 통제 및 '산경장'을 통해 주요 결정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회·관계기관·부처 등과 공유

③ **(공정성)**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투자심의위(1차심사)', '기금운용심의회(법정기구, 2차심사)' 등)이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

④ **(정부전략반영)** 정부는 '산경장' 등을 통해 국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하고 정부가 '투자가이드라인' 단계부터 적극참여

33.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계획이나 성과 공개의 시기와 범위·
방식·내용은?

-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계획은 매년 연말경 최종의사결정기구인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한 이후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국회 등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운용성과에 대해서도 운용사·기업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 예정

34. 국민성장펀드로 인해 관치금융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지?

-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세계 각국은 직접보조금 지급 및 막대한 정부지원, 고율 관세부과 등 국가단위 총력전 진행 중('투자 전쟁')

 - 지금은 미래 성장엔진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단위의 총력전을 수행해야하는 시기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합동 금융 지원을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정부보증채로 조달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에 개별 투자단위(사업, 프로젝트, 펀드출자)별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75조원 이상 이루어져 프로젝트규모가 150조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은행이나 금융권이 미리 자금을 선조성하거나 할당하여 납입하는 방식이 아님 → 프로젝트별 개별 심사에 따라 함께 참여
- 정부보증채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위험 분담과 인내투자에 나서고 이를 통해 민간·연기금 등의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
 - 재정과 정부보증채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여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연기금·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 연기금이나 민간금융기관은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것임
(☞ 출연액을 할당하거나 사전에 납입하는 방식이 아님)
- 국민성장펀드의 거버넌스에도 민간전문가 등을 충분히 참여시켜 정부 또는 특정주체만이 주도하지 않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

| 미국 | 일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527억달러 (제조시설 390억 달러 + R&D 137억달러) - 투자세액공제 25% 별도 도입 ·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공장의 투자세액공제 최대 30% - 핵심부품 및 광물생산비용 10% 세액공제 · 자동차·반도체·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 수입품 고율관세 부과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산업경쟁력 강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6조엔 (시설투자액의 1/3, 기술개발액의 1/2) -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10년간 법인세액의 20~40% 공제) · 39조엔 규모 종합경제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반도체 산업 10조엔 지원 등 · 민관합작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8월 정부+8개 민간기업 공동 출자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 정부예산 출자 및 라피더스보유 채무이자에 대한 지급보증 등 지원 |
| 중국 | 기타 국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제조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부품과 재료 국산화율을 30%→70% 상향하기 위한 청사진 - 반도체분야에만 562조원 펀드투자 - SMIC(지분 31.1%)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여 투자확대 · 이차전지·디스플레이 기업 등에 각종 보조금 지급(CATL 8.1억달러, BOE 4.2억달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독일 최대 반도체업체 인피니언의 공장신설에 9.6억달러 보조금 승인 · (프랑스)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 일부 현금페이백 · (캐나다) 청정기술 관련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 중 |

별첨

일본 라피더스 사례

□ 개요

-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22년 8월 정부 주도로 8개 일본 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 Kioxia, Sony, Softbank, Denso, Toyota, NEC, NTT, MUFG Bank

□ 사업 계획

- '27년 2나노 미세공정 양산을 목표로 홋카이도 치토세에 반도체 공장을 '23.9월 착공했으며, '25.4월 2나노 반도체 시제품 생산 추진
- IBM과 2나노 제품개발을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AI반도체, Networking 장비용 반도체, 자율주행용 제품에 집중할 전망

□ 일본정부 지원

- (보조금) 연구개발 등에 9,200억엔(약 8.3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
- (출자)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25년 1,000억엔(약 9,300억원) 출자 계획

*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라피더스의 주주로서 역할

- (보증) 라피더스의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채무 및 이자 지급 보증 지원 내용의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 마련('24.12월)

일본 「종합경제대책」('24.11.22) 内 반도체 지원내용

- 일본은 경제성장 지원, 고물가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위해 총 39조엔(354조원) 규모(일반회계 : 13.9조엔)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 (단위: 조엔) | 전체 | 경제성장 지원 | 고물가 대응 | 국민 안전 |
|----------|------|---------|--------|-------|
| 전체 사업규모 | 39.0 | 19.1 | 12.7 | 7.2 |
| 재정지출 | 21.9 | 10.4 | 4.6 | 6.9 |

- 특히, 자국 AI·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0년까지 총 10조엔(90.8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
-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전력 반도체 양산 투자 등에 6조엔 보조금 지급, 민간대출에 대한 출자·보증 등 4조엔 금융지원

8 조성·집행

35. 국민성장펀드는 언제부터 조성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운용되는지?

국민성장펀드는 개정 「산은법」 시행일인 '25.12.10자로 출범하여 20년간 운용

○ 다만, 투자의사결정 시한은 국민성장펀드 출범 후 5년 이내로 하여, 신속하게 투자처를 발굴할 계획

* 자금지원 기간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금지원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승인이 5년 이내 이루어져야 함

※ 관련 산은법 부칙 제2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36. 15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현실적으로 조성이 가능할지?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은 매년 국회로부터 국가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정부보증채인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성 예정
-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유치하는 민간자금 75조원은
 - 수익성 등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연기금·금융회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게 되며,
(☞ 출연액을 할당하거나 사전에 납입하는 방식이 아님)
 - 최근 5대 금융지주 및 기업은행에서 각 10조원씩 총 6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에 맞춰 원활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37. 150조원의 지원방식·업종·분야별 배분 계획이 있는지?

-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저리대출 50조원,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및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지원할 예정
- 업종별로도 대략의 배분안이 존재하나,
 - 현장의 수요,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상황에 따라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

38. 지원방식·업종·분야별 배분계획은 경직적인 것인지 유동적인 것인지? 계획을 조정할 경우 의사결정은 언제 누가 하는지?

- 지원방식·업종·분야별 배분 계획은 유동적이며,
 - 향후 산업현장 수요 등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경쟁력강화관 계장관회의 및 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할 예정

39. 15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만한 투자처가 있는지? 조성금액 전액 집행이 가능할지?

- '25년초 산업부가 조사한 첨단전략산업의 자금수요는 약 389조원
 - AI 전환 자금수요까지 고려하면 총 투자수요는 약 500조원 수준
 - 설비투자 금액의 약 31.4%*가 외부차입인 점 감안시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집행 수요는 약 150조원 수준으로 전망
- * 국내 비금융영리법인의 차입금의존도 31.4%('23년, 한은 기업경영분석)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산업부-'25년 초 조사)】

| 업종 | | 연도별 투자 계획(조원) | | | | | |
|----------|-------|---------------|-------|-------|-------|------|---------------|
| |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총계 |
| 첨단 산업 | 반도체 | 60 | 60 | 60 | 60 | 60 | 300 |
| | 이차전지 | 6.71 | 6.54 | 4.43 | 4.87 | 5.0 | 27.55 |
| | 바이오 | 2.13 | 1.5 | 1.5 | 1.5 | 1.5 | 8.13 |
| | 디스플레이 | 9.5 | 9.5 | 9.5 | 9.5 | 9.5 | 47.5 |
| | 로봇 | 0.4 | 0.4 | 0.4 | 0.4 | 0.4 | 2 |
| | 방산 | 0.7 | 0.7 | 0.7 | 0.7 | 0.7 | 3.5 |
| 소계 | | 79.44 | 78.64 | 76.53 | 76.97 | 77.1 | 388.68 |

40.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개시 이후 언제부터 회수되어 언제쯤부터 이익이 배분되는지?

[직접투자방식 및 기관투자자용 사모펀드의 경우]

- 직·간접투자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회수 시점이 상이
 -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투자 개시 후 통상 4~5년 경과 시점부터 회수 발생(회수되는 재원에 대하여 수시 배당 가능)
 - * 운용사 선정시 투자대상 미정 → 민간운용사가 투자대상 등을 자율 결정 (결성된 펀드 재원을 통상 5개 이상 대상에 분산투자)
 - 프로젝트펀드*는 펀드 만기시(5~7년) 투자금 전액 회수
 - * 특정 투자건에 대하여 조성하는 펀드 → 출자시 투자건이 정해져 있음

[저리대출 및 인프라투융자 사업의 경우]

- 시설자금 위주의 저리대출·인프라투융자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대출원리금·투자금의 회수 일정이 상이
 - 통상적으로 건설기간 동안은 약정이자만을 수취한 후,
 - 건설 완료 이후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 및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회수
- ※ 통상적인 대출기간(시설자금) 7~10년, 인프라대출 15~20년

[국민참여형 펀드-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경우]

-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 이나 과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4년간 투자기간 종료 후 회수 하였음

9 재정

41. 국가 재정은 얼마가 투입되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재부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 재정은 후순위 보장 등에 사용되어, 자금시장 상황 및 프로젝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장치

○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해 '26년에는 재정 1조원*이 출자되며, '27년 이후 재정의 투입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

* '26년 조성 계획규모 30조원 대비 재정출자비율 3.3%

【(참고) 2026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지원계획】

| 방식별 | 직접투자 | 간접투자 | 인프라투융자 | 저리대출 |
|----------------|---------------------------------------|---------------------------------------|------------------------------------|---|
| 규모 (총 30조원) | 3조원 첨단기금 1.5조원 +민간 1.5조원 | 7조원 첨단기금 1.5조원 +민간 5.5조원 | 10조원 첨단기금 2조원 +민간 8조원 | 10조원 첨단기금 10조원 (산은 역마진 감수) |
| 재정 (총 1조원) | 1,500억원 | 4,500억원 | 4,000억원 | - |



【 '26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운용계획(안, 억원) 】

| 구분 (펀드조성목적) | 재정투입액 (후순위 or 마중물) | 첨단전략 산업기금 (A) | 민간자금 유치목표 (B) | 조성목표 (A+B) | 재정 포함 합계액 |
|------------------|--------------------------|---------------------|---------------------|---------------|---------------|
| 간접투자방식 전체 | 4,500 | 15,000 | 55,000 | 70,000 | 74,500 |
| 1 일반정책성펀드 | 3,300 | 14,700 | 49,300 | 64,000 | 67,300 |
| 재정투입펀드 | 3,300 | 10,600 | 32,900 | 43,500 | 46,800 |
| 산업전반지원 | ① 1,600 | 2,400 | 22,000 | 24,400 | 26,000 |
| 스케일업전용 | 300 | 600 | 4,100 | 4,700 | 5,000 |
| 개별산업지원 | ② 400 | 1,100 | 3,500 | 4,600 | 5,000 |
| 지방지원 | 200 | 500 | 1,300 | 1,800 | 2,000 |
| 초장기 기술투자 | ③ 800 | 6,000 | 2,000 | 8,000 | 8,800 |
| 부처사업지원 | - | 400 | 3,100 | 3,500 | 3,500 |
| 프로젝트펀드 | - | 3,700 | 13,300 | 17,000 | 17,000 |
| 2 국민참여형펀드 | ④ 1,200 | 300 | 5,700 | 6,000 | 7,200 |

* 산은 민간운용사 등이 함께 그간의 정책펀드 운영, 정책방향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

42. 재정은 산은에 출자되는건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되는건지?

- 재정 1조원은 산업은행에 자본금 증자 방식으로 출자되며,
 - 산업은행은 재정 출자분(1조원)을 '재정 모펀드' 또는 신탁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되지 않음

43. 재정도 조성목표인 150조원에 포함되는지?

- 재정 투입금액은 조성목표인 150조원에 포함되지 않고,
 - 후순위 보장을 통해 자금시장 상황 및 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44. 재정·기금 투자자금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국고로 환수하는지? 환수 시기는?

- 투자완료 후 재정 회수금 발생시, 산업은행의 정부에 대한 특별배당 형식으로 국고로 환수*할 예정

* 예: 회수재원이 2,000억원 발생하는 경우 산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배당에 더하여 2,000억원을 특별배당방식으로 추가로 정부에 배당하는 방식

- 재정 외 기금의 회수금 발생시, 국고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 운용기간(20년)중 회수된 기금 재원은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 국가채무 부담을 완화

10 역할/영역 중복 문제

45. 기존 운영되던 정책펀드와 통폐합되는지?

□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기존 정책펀드(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는 국민성장펀드로 흡수

□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별도 신설(5,000억원)하여 첨단산업 외 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

※ 국민성장펀드 5,000억원 + 별도 스케일업 펀드 5,000억원 = 1조원(5년 5조원)

○ 또한, 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컨더리펀드*를 별도 조성(5년간 2조원)하여, 초기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회수 생태계 지원

* 기존 펀드의 LP지분, 구주 등 매입 목적의 전용 펀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정책성펀드 정비】

| 기존 펀드(2025년 조성 기준) | | |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펀드 효율화 | | |
|--------------------------------|---------------------------|---------------|---|---------------------------|---------------|
| 펀드명 | 규모 | 구분 | 펀드명 | 규모 | 구분 |
| 혁신성장펀드 · 혁신산업펀드 · 스케일업펀드 | 3조원 · 1.5조원 · 1.5조원 | 재정 + 산은 | 국민성장펀드 민간운용사 발굴사업 지원 프로젝트펀드 (1.7조원) 포함 | 7조원 (과거 유사성격 3.9조원) | 재정 + 산은 |
| 반도체생태계펀드 | 1,200억원 | | | | |
| 원전산업성장펀드 | 1,000억원 | | | | |
| AI생태계펀드 | 5,000억원 | 산은 | 스케일업펀드 | 5,000억원 | 산은 |
| 세컨더리펀드 | 5,000억원 | 산은 | 세컨더리펀드 | 5,000억원 | 산은 |
| 합계 | 4.22조원 | | 합계 | 8.0조원 | |

46. 지금까지 재정이 들어간 정책펀드(뉴딜펀드 등)의 성과는 어떠한지? 기존 정책펀드와 운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 (기존 정책펀드 성과) 여러 정책펀드들은 한정된 재정여건 下 미래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나름의 성과를 시현중
- (기존 정책펀드와 차이) 그간의 정책성펀드가 지원방향을 정한 뒤 구체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처를 민간에 맡겨왔다면
 -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의 산업전략을 기초로 구체적인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사업·투자처를 발굴하고,
 - 단순 자금지원이 아니라 금융·규제·세제 등을 망라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적 토탈솔루션 제공

47. 모태펀드와의 관계는?

-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는 조성취지, 투자분야, 투자방식 등 여러 차이점이 존재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반면, 모태펀드는 초기창업·벤처 생태계를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중소기업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하고 주로 초·중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분투자 위주로 운용
-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정책금융협의회, 금융위-중기부 간 협의체 등 다양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정책펀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논의하여 중복을 방지할 계획

48. 공급망기금과의 관계는?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은

- '19년 일본의 수출규제(불화수소 등)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어 소재, 부품 등이 주요 지원대상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산업은행)은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로 설치되어 첨단전략산업 기술·인프라, 전·후방산업 등 생태계 전반이 지원대상

별첨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설립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 (‘24.7월 출범)

○ (근거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략)...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 **[지원대상 분야]**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에서 정한 다음 각 분야

- ①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 ②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투자 및 운영
- ③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④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지원
- ⑤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

□ **[기금 재원]**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

☞ ‘25년 10조원 한도로 발행가능*

* 국민성장펀드: 기금채 15조원 + 민간자금 협력·유치 15조원 등 총 30조원

○ 기금채권의 원리금은 기금 부담으로 상환(정부 보증)

- 발행주체(수출입은행)의 고유자산을 통한 상환의무가 없는 구조

□ **[기금 조성기간]**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후 5년간* 기금조성 가능

* 일몰기한 도래시 공급망 상황, 지원효과 등 감안하여 연장 검토

□ **[자금지원 방식]** 대출, 보증 및 투자

□ **[기금회계]** 기금회계는 수은의 일반회계(고유계정)와 구분

○ 계정을 구분하여, 기금의 손익이 수은 고유계정의 재무건전성(BIS비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 중점 지원부문 및 유관 품목·서비스 >

| 4대 부문 - 12대 분야 | | | | | | | | | | | |
|----------------|-----|-------|-------|-------|-----|--------|------|------|---------|------|-------|
| ①첨단전략산업 | | | | ②자원안보 | | ③경제필수재 | | | ④물류 인프라 | | |
| 이차전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제약바이오 | 핵심광물 | 에너지 | 식량 | 산업원료 | 기계장비 | 운송 | 저장비축 | 항만인프라 |

49. 산업은행이라는 정책금융기관이 있는데 추가로 왜 만들었는지? 산업은행 본체와 국민성장펀드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 첨단전략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기술·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해, 민간 금융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고
 - 세계 각 국이 직접보조금 등 대규모 정책자금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 산업은행은 쏠산업을 아우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 및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지원에 한계가 존재
 - * 특정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 한도 존재, BIS비율 등 은행 건전성 규제 적용 등
- 따라서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기금을 설치하되, 산업은행과 회계적으로 분리*하고 정부보증채로 7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을 조달토록 함으로써,
 -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존 산은 자체 지원시보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다 장기·대규모·고위험의 지원이 가능
- 국민성장펀드와 산은 본체가 서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다 투텝고 촘촘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50. 국민성장펀드와 다른 정책펀드/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예: 모태펀드/산은본체 + 국민성장펀드)

- 다른 정책펀드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이 가능하나,
 -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과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타 경우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
- 다만, 동시 지원이 아니라 과거 초기투자를 받은 이후 기업이 성장하여 신규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심사·지원할 계획

51. 다른 정책펀드와 중복을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정책금융협의회, 금융위-중기부 간 협의체 등 다양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 각종 정책재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음
- 뿐만 아니라, 개별건의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다른 정책펀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다른 정책펀드의 투자를 받은 경우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

52. 국민성장펀드가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것 아닌지?

-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앞단은 기술경쟁이지만 더 실질적인 뒷단은 투자전쟁임
- 첨단전략산업은 ①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②매우 큰 규모로,
③장기간 인내하는 투자 필요
 - ☞ 산업계 또는 민간금융권만의 힘으로는 감당 어려움
- 민관합동으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자금만으로는 충분히 투자
되기 어려운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에 ①후순위 위험부담, ②장기 저리방식
으로 자금을 지원
- 이를 통해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마중
물 역할로 개별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사업진행속
도 및 투자집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1차 프로젝트 7건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선정*되었음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인프라 ☞ 사업속도 촉진
국가 AI컴퓨팅센터, 전고체배터리, 전력반도체 ☞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추진가능
K-엔비디어 지원 사업 ☞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단계에서 해외자본 의존 경감

11 기타

53. 산업은행 신설된 사무국 인력 구성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언제부터 몇 명 파견 예정인지?

- 산업은행에 신설된 사무국은 1개 부문(부행장 1명), 4개 국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민간전문역량 활용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 채용도 진행 중
-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 국민성장 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5.11.17)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금융회사로부터의 전문인력(대출,투자,심사)도 10명 이상 파견절차 중

54.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강제로 끌어쓰는 것은 아닌지?

□ 재정 또는 정책자금을 마중물(후순위 출자 등)로 하여 금융권 등 민간 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금융공급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 예: 現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 재정 10%, 산은 20%, 연기금·민간 금융권 자금 70%

○ 국민성장펀드도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여 연기금·금융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예정

□ 국민성장펀드 조성시,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으며,

○ 연기금이나 민간금융기관은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것임

(☞ 출연액을 할당하거나 사전에 납입하는 방식이 아님)

○ 이 과정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함

55.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조성이 산업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산업은행 내에 설립됨으로써,
 - 단기적으로는 회수자금이 미비*한 상태에서 조달(정부보증채)·운영 비용 지출을 산은이 부담하여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은 단시일 내에 발생하나, 투자의 경우 회수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 가능
 - 다만, 산은의 역마진 감수는 산은의 설치 목적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할 필요
 - 현재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5.0%수준(25.3분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은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 회수 등에 따른 수익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기금 역시 재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6. 은행권의 펀드 출자분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개별 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 받음
 - 특히, BIS 비율은 위험자산을 보유할 경우 낮아지게 되며, 지분·투자 등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isk Weight ; RW)가 높을수록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은행이 국민성장펀드 출자한 것에 적용하는 RW를 낮추면 BIS 비율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므로,
 - 동일한 BIS 비율 조건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펀드에 출자할 수 있어 은행권의 펀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

57. 금융회사의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여타 주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ngf.kdb.co.kr)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가능
 - 산업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하나, 공식적인 서면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
- 또한 정부 내 설치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통해서도 국민성장펀드 관련 프로젝트 제안을 신청할 수 있음

58. 금융회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지?

□ 금융회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투자건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투자 가능

① 국민성장펀드가 민·관 전문가를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엄선*하므로, 보다 손쉽게 건전한 투자처 접근 가능

* 투자심의 절차(2단계) : 투자심의위원회(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 등)
→ 기금운용심의회(각계 추천 민간전문가)

② 재정의 후순위 보강으로 손실가능성·리스크를 완화

□ 또한, 금융회사가 손실 발생시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망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

59. 국민성장펀드에 연기금이나 보험회사도 참여가 가능한지?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보험회사도 당연히 국민성장펀드에 참여 가능
- 개별 주체들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방식, 프로젝트의 위험도·수익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으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 가능

60. 발행어음·IMA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대상에 국민성장펀드 참여도 포함되는지?

-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대상에 포함됨
-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출연금,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기금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이 모험자본으로 인정됨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①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은 제외한다.

13.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출연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4.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